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영민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04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
발 의 자 : 문영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유광상, 김인호, 황준환,  
최판술, 김상훈, 김제리,  
이복근, 장인홍, 강구덕,  
김혜련, 송재형 의원(11명)

## 1. 제안이유

「항공법」이 폐지되고 「공항시설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「항공법」을 「공항시설법」으로 수정함(제49조제1호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항시설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(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주재하는”을 각각 “주관하는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안하고자 하는”을 “제안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청취하고자 하는”을 “청취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5항 중 “반영하고자 하는”을 “반영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행한다”를 각각 “수행한다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7호 중 “개발하고자 하는”을 “개발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건축하고자 하는”을 “건축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지정하고자 하는”을 “지정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하고자 하는”을 “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반하지”를 “다르지”로 한다.

제44조제3항 중 “반하지”를 “다르지”로 한다.

제49조제1호 중 “「항공법」”을 “「공항시설법」”으로 한다.

제55조제3항제3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“건축하고자 하는”을 “건축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58조의3의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을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해촉을”을 “위촉 해제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촉된”을 “위촉 해제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)</p> <p>①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<u>주재하는</u>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공청회를 <u>주재하는</u>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 (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)</p> <p>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주관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----- <u>주관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 (도시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시장은 <u>구청장</u>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4조 (도시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<u>자치구청장</u>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제6조 (제안서의 처리절차 등)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·③ (생략)

제7조 (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) ①시장은 법 제28조제3항·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를 포함한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,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시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

제6조 (제안서의 처리절차 등) ①-----  
-----  
----- 제안하려는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 (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) ①-----  
-----  
----- 청  
취하려는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물소유자(세입자 포함)에게 의견  
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 
통해 알릴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⑤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  
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 
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  
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 
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 
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  
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  
어야 한다.

⑥ (생략)

제14조 (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 
결정 등) ①법 제47조에 따라 매  
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 
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 
이행은 제10조 및 제68조에 따라  
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·관리  
할 자가 행한다.

②도시계획시설을 설치·관리할  
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 
아니하는 시설로서 해당 도시계획  
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지지  
아니한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

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-----  
----- 반영하려  
는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4조 (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 
결정 등) ①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수행한다.

②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절차 등의 이행은 제10조 및 제68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·허가·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(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)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.

제16조 (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)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7. 민자역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
8.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(아파트에 한한다)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, 그 규모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다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수행  
한다.

제16조 (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----- 개발하려는 -----
8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건축하려는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만,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(생략)

제17조 (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) 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(이하 “시도시계획위원회”라 한다)에 자문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결과 및 개략적인 구역의 지정구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 (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) ① (생략)

②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함에 있어 시 구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 (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) ① ----- 지정 하려는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하려는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8조 (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

쳐 처리하는 경우 동 위원회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.

제44조 (용도제한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, 제7호 및 제8호의 건축물로서 「건축법」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 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9조 (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)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「항공법」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

-----  
----- 다르지 -----  
-----  
-----.

제44조 (용도제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다르지 -----  
-----  
-----.

제49조 (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「공항시설법」-----  
--



